

2026

자격증, 공무원 시험 산업안전보건법령

엠북 노동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규칙, 별표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 2시간 54분 완성

도서명 : 산업안전보건법령

ISBN : 979-11-7393-212-0

발간일 : 2026-04-20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5,000원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p37)

제3장 안전보건교육(p6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p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p106)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p145)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p18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p22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p249)

제10장 근로감독관 등(p265)

제11장 보칙(p269)

제12장 벌칙(p293~311)

[약어/용어]

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부령은 고용노동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노조는 노동조합

안전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들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예방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도급인

인증대상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확인대상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감사대상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개선계획은 안전보건개선계획

개선계획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방지계획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관

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

해고등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유해/위험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유해/위험작업은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13조

1. 목적

- 산업 안전/보건 기준 확립, 책임 소재 명확히 함
-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 제공 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2. 정의

가.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노무 제공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나. 중대재해는 산재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다음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다.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사업장에 근로 제공하는 자

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 하는 자

마.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 노조 있으면 노조를,

-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

바.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 제조, 건설,**

수리나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이하

물건제조등)을 타인에 맡기는 계약

사. 도급인은 물건제조등 도급하는 사업주

-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아.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제조등

도급받은 사업주

자.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때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차.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 않는 자

-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카. **건설공사**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

타. 안전보건진단은 산재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 개선대책 수립 목적으로 조사/평가

파.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 측정계획 수립 후 시료 채취, 분석/평가

3. 법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에 적용
- 단, 유해/위험 정도, 사업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는 건설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다음 사업, 사업장에 법
전부/일부 적용안함

가.

1) 대상 사업

a)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 광업 중 광물 채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공정에 한정

- 제조공정은 제외

b)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정

c)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 항공기, 우주선, 부품 제조업과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 제외

d)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선박/보트 건조업은 제외

2) 적용 제외 규정

- a) 안전전문기관 등, 산업안전보건위(단,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시는 제외)

- b)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교육면제 등,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 장관의 시정조치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단, 보건 사항은 제외

c) 기타

-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안전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유해 작업 도급금지
- 도급 승인
- 도급 승인시 하도급 금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장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제외)
-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안전/보건 협의체 등 구성/운영 특례
- 안전인증기관
-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정보 종합관리
- 유해인자의
- 분류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관리, 노출기준 설정, 허용기준 준수
- 전문기관들, 안전인증기관 관련 과징금

나.

1) 대상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단, 사진 처리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적용 제외 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단, 추가교육 제외), 교육 면제 등

다. 다음 사업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복원업
- 소매업(단,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업
-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리업 제외)

- 임대업(단,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단, 병원 제외)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단체
- 개인 서비스업(단, 세탁업 제외)

라.

1) 대상 사업

- a)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장관 고시 자는 제외),
국방, 사회보장 행정
- b)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장관 고시 자는 제외)

2) 적용 제외 규정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시는
제외)

마.

1) 대상 사업

a)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b) 국제/외국기관

c)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장이 분리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2) 적용 제외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제외)

- 단,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시 해당 규정

적용

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용 사업장에 다음

규정 적용 제외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단, 추가교육 제외)

- 안전보건진단